제3회 대한민국 인심일터 대상 시상 계획

2025. 7.



KBIZ중소기업중앙회

포상 개요

ㅁ 포상 목적

1

○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중소기업과, 산업안전보건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·포상함으로써,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의 사기를 고취하고, 사회 전반에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

□ 주최: 산업안전상생재단, 중소기업중앙회(후원: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현대차그룹)

ㅁ 시상 부문 및 신청 대상

구분		신청 대상	
대상		o 실행력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거둬 타의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	
		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,3)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인 사업장	
특별상	기업	o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으로, 재단 전문위원 추천 및 심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	
		- 안전상생 지원 프로그램 수준평가 결과 P단계 인증* 사업장	
	개인	o 장기간 안전·보건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계자, 재해예방기관 임직원, 노사단체 등 관련분야 종사자	

* '25년 이전 컨설팅 받은 사업장으로 수준평가에 따른 등급부여를 받지 못한 사업장은 재단 전문위원 추천서로 대체

口 시상 내역: 총 2,200만원, 6개社 · 2人 포상

구 분		시상 내용		
대 상 (4점)		ㅇ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4개 기업을 '대상' 으로 선정하며, 그 중 최우수 사업장 에 '종합대상'수여		
		-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(종합대상, 상금 500만원)		
		-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,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, 재단법인 이사장상 각 1점 (대상, 상금 300만원)		
특별상 (4점)	기업 (2점)	ㅇ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상 2점 수여(상금 200만원)		
	개인 (2점)	ㅇ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,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1점 수여(상금 200만원)		

※ 상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

※ 심사결과 적격한 수준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,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

□ 시상식: 2025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행사[11/20(목)], 수상자* 필참

* 기업상 : 대표자 참석, 개인상 : 수상자 본인 참석

ㅁ 수상기업(인) 특전 및 의무

- 수상기업은 수상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, 향후 재단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우선권 부여
- O 요청 시 재단이 주최하는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해야 하며, 안전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공개 요청 시 이에 융하여 함.
- O 기념 인터뷰(컨퍼런스 행사 동영상, 재단 뉴스레터 등)

2 추진 일정 및 심사기준

ㅁ 추진일정

O 신청기간: 2025. 7. 23(수) ~ 2025. 9. 12(금)

○ 심사위원회 심사

- 서류심사 : 2025. 9. 15(월) ~ 2025. 9. 19(금)

- 현장심사 : 2025, 9, 22(월) ~ 2025, 10, 24(금)

- 최종심사 : 2025. 10. 29(수)

O 수상자 안내: 2025. 11월 초

O 시상식: 2025. 11. 20(목) (2025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)

※ 상기 신청 기간 및 심사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ㅁ 심사절차

- O 대상, 특별상(기업) 부문
 -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중대재해 현황*, 중소기업 여부 등 행정적 결격사유와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현장심사 대상 선정
 - * 대상 부문의 경우 3년간 중대재해·중대산업사고 발생, 직업병 다발, 산재 은폐 등 사회적인 물 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에서 제외
 - 재단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고경영자 인터뷰 및 현장평가 실시
 -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, 현장심사 결과와 심사위원 평가를 종합하여 수상자 선정
- 특별상(개인) 부문
 -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공기간, 수행업적(기여도), 전파확산 가능 여부 등을 심사 위원회에서 평가 실시
 - *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개인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심사 제외
 -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및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음

ㅁ 심사기준

구 분		심사 항목	심사기준	
대 상		최고경영자 인터뷰	·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철학과 리더십 · 경영자의 실질적 참여 정도(안전회의, 순회점검 등) · 사내 안전문화 확산 노력	
		안전보건관리 활동	· 안전보건 조직 체계 및 전담 인력 운영 현황 ·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역할 부여 및 수행지원 · 위험성평가의 체계적 운영 및 개선조치 이행 정도 · 근로자 및 관련 업무자 대상 정기/수시 교육 체계 · 전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수준 및 실적 · 비상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실제 훈련 실시 여부 ·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성 평가 및 주기적 개선 여부 · 외부 안전보건 인증 및 우수사례 인정 실적(ISO45001, KOSHA-MS,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등)	
		산업재해율	·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	
		벤치마킹 요소	· 자사만의 차별화된 안전관리 사례 · 타 사업장에서도 도입 가능한 안전관리 우수사례	
특별상	기업	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	·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정도와 기업 안전문화 수준 평가 *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 프로그램 평가지표 결과 활용	
		벤치마킹 요소	· 자사만의 차별화된 안전관리 사례 · 타 사업장에서도 도입 가능한 안전관리 우수사례	
		가산점	·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장 ·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 프로그램 F단계 인증 사업장 · '25년도 재단 우수 현장 벤치마킹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	
	개인	수공기간	· 안전/보건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	
		수행업적	·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·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의식 확산 노력 · 재해예방활동 노력(교육, 근로자 참여유도 등) · 수공자 개인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· 정부 및 유관기관의 산재예방활동 참여 및 협조 정도	

3 신청 방법

구분	LHY	특별상					
	대상	기업	개인				
신청인	소속기업 관계자가 신청	소속기업 관계자가 신청	개인이 신청				
제출 서류	1. 신청서, 공적조서(붙임1) 1부 - 제조업/건설업 구분하여 제출 - 원본 파일 및 서명(직인) 반영 스캔본 1부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. 중소기업(소상기업) 확인서 1부 4. 사업장 산업재해율('23~25) 확인서 1부 - 산업안전포털에서 출력 (portal.kosha.or.kr) 5.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(붙임2) 1부	반영 스캔본 1부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. 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- 전체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3. 담당 전문위원 추천서 (붙임3) 1부 4. 사업장 산업재해율('23~25) 확인서 1부	1. 포상 신청서 및 공적조서 (붙임4) 1부 - 원본파일 및 서명(직인) 반영 스캔본 1부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. 재직증명서 1부 3. 개발품 1점(해당되는 경우) 4. 안전·보건 활동 실적 증빙				
제출	-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(contest@ispf.or.kr)로 9.12(금)까지 제출 - 파일명 작성 요령 ex) 대상 부문: 기업명(2025 대한민국 안심일터대상 포상공모_대상) 특별상 부문: 기업명 또는 개인명(2025 대한민국 안심일터대상 포상공모_특별상) - 문의사항: 산업안전상생재단 경영지원팀(02-742-7021)						

4

포상제외 및 취소

□ 포상제외 대상자

- 동일 수상분야로 수상경력이 있는 사업장은 3년 이내 재포상 금지
-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법인 또는 개인
-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 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법인
- 「국세기본법」에 의거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의거하여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,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 또는 개인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개인

ㅁ 포상의 취소

- O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- 포상제외 대상자이지만, 해당사실을 속이고 지원한 경우
- 추천자가 피추천인에게 부당한 요구(대가, 상금 분할)를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- 신청인이 청탁을 목적으로 관계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- 수상기업(인)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
- 성폭력·성희롱·성추행 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
- 직장 내 차별·괴롭힘·따돌림 등으로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
- 부정청탁(입찰선정, 인사관리 등)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경우
- 공금횡령으로 인하여 소송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

ㅁ 포상의 환수

○ 포상이 취소되는 경우, 해당 기업(인)은 수여된 상장, 상패, 상금을 10일 이내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. 또한,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포상한 사실을 즉각 철회한다.